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영 등 포 구 의 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목 차 ■

1. 조사 근거	1
2. 조사 목적	1
3. 조사 개요	2
4. 특별위원회 구성	2
5. 추진 경과	3
6. 관련 자료 검토	7
7. 조사 실시 내용	12
가. 활동사진	12
나. 증인 및 참고인 조사	15
다. 추진실적	16
8. 조사 결과 및 처리 의견	23
9. 향후 계획	2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I 조사 근거

- ☐ 「지방자치법」 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II 조사 목적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2022.12.]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은 현재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청장은 각종 언론 및 주민간담회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며, 약 10년간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있음. 이는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을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함. 또한 의료특구, 금융특구, 메낙골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의 추진 사항, 문제점, 대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2023.1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금융특구·의료특구 사업, 메낙골 지구단위(안)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Ⅲ 조사 개요

- ☐ 발의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2022.12.13.)
- ☐ 발의의원: 차인영 의원 외 7명 수정안 발의
 - 원안은 김지연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안 제안 사유: 행정사무조사 대상의 특정성 및 사무조사 사전 준비를 위한 기간 고려
- ☐ 조사기간: 2022. 12. 19. ~ 2025. 08. 31.
 - ※ 1회 연장(2023.06.22.): 2022. 12. 19. ~ 2023. 12. 31.
 - ※ 2회 연장(2023.12.21.): 2022. 12. 19. ~ 2024. 05. 31.
 - ※ 3회 연장(2024.05.17.): 2022. 12. 19. ~ 2024. 11. 30.
 - ※ 4회 연장(2024.11.20.): 2022. 12. 19. ~ 2025. 03. 31.
 - ※ 5회 연장(2025.03.21.): 2022. 12. 19. ~ 2025. 08. 31.
- ☐ 조사대상: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 ☐ 조사범위(조사사무)
 - 제2세종문화회관 신축 건립 건
 - 금융특구·의료특구 사업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 사업

Ⅳ 특별위원회 구성

- ☐ 구성현황
 - 구성일자: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12.13.)
 - 추가선임: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2025.03.27.)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고
		성 명	소관상임위	
신흥식 (행정위원회)	※ 2023.5.3. 부위원장 사임	김지연	행정 위원회	※ 추가 선임 : 임현호, 이순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현호	사회건설 위원회	
		전승관		
		차인영		
		이순우		

V

추진 경과

차 수	일 시	활동 내용	비고
2022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12.13.	○ 행정사무조사 발의 ○ 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제1차	2022.12.19.	○ 위원장 선임: 신흥식 의원 ○ 부위원장 선임: 박현우 의원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수정안 의결 - (조사목적)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 관련 사무 전반”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사업” - 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 삭제함	
2022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12.21.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수정안 의결	
제2차	2023.02.06.	○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결 - 총 9건의 자료 요구 의결	
제3차	2023.02.17.	○ 업무보고 요구의 건 의결 - 보고일시: 2023.02.24. - 보고대상: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 보고자: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제4차	2023.02.24.	○ 업무보고 -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 업무보고 요구의 건 의결	
제5차	2023.03.17.	○ 업무보고(계속) ○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결	

차 수	일 시	활동 내용	비고
제6차	2023.04.12.	○ 증인 등 출석 -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신문 없이 연기함 ※출석대상자: 증인 9명, 참고인 2명 - 출석자: 증인 8명 (증인 1명 참고인 2명 불출석)	
제7차	2023.04.21.	○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결 - 출석대상자: 증인8명, 참고인2명	
제8차	2023.05.03.	○ 부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추천했으나 고사함 - 부위원장 선임 못 하고 공석 상태 ○ 증인 등의 회의 비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의 건 의결 ○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 출석자: 증인8명, 참고인1명 (참고인 1명 불출석)	
제9차	2023.06.22.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023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06.27.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 조사 기간 변경	
제10차	2023.11.27.	○ 현장 방문 - 방문대상: 문래동 공공공지, 메나폴 지구단위계획구역	

차 수	일 시	활동 내용	비고
제11차	2023.12.18.	○ 업무보고의 건 - 보고대상: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사업 - 보고자: 푸른도시과장, 도시계획과장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023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12.21.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 조사 목적 변경 - 조사기간 변경 - 조사 대상 및 범위 변경	
제12차	2024.05.13.	○ 업무보고의 건 - 보고대상: 금융특구·의료특구 사업 - 보고자: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024년 제252회 임사회	2024.05.17.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제13차	2024.11.18.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024년 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24.11.20.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차 수	일 시	활동 내용	비고
제14차	2025.03.19.	○ 업무보고의 건 - 보고대상: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 보고자: 미래도시국장, 미래공간과장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025년 제259회 임사회 (제1차)	2025.03.21.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2025년 제259회 임사회 (제2차)	2025.03.27.	○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제15차	2025.08.27.	○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되어 안전 미처리	
제16차	2025.08.29.	○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VI 관련 자료 검토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에 대한 자료 검토

□ 사업개요

- 위 치: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구유지 12,947 m^2)
- 추진기간: 2018. 12. ~ 2026. 12.
- 규 모: 연면적 27,930 m^2 (지하 2층, 지상 5층)
- 용 도
 - 대공연장(2,014석), 소공연장(300석), 문화/지원시설
 - 뮤직라이브러리, 문화·영상아카데미 교육장, 어린이 시설, 강의실
- 사 업 비: 1,626억원(토지비 800억원 제외), 전액 시비
- 사업주체: 시(공연장 건립), 구(토지제공), (재)세종문화회관(운영)

		
위 치 도	조 감 도	배 치 도

□ 조사결과 주요내용

- 조사시점
 - 「글로벌 음악 도시, 서울」(‘19.9) 전후의 관계 서류
 - 제2세종문화회관의 대상지(문래동 일원)가 확정된 시점
- 조사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사업 관련 문서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은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고려한 중앙투자심사(‘21.11.: 조건부 통과) 및 타당성 조사(‘22. 4.~12.)의 과정을 완료함.

- 전체 사업공정의 추진 단계인 「계획 → 설계 → 공사」 중 이미 계획('18~'21.)을 완료하였고, 설계단계의 중반('22.5.: 국제현상공모 의뢰)을 추진 중이었음.
-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대상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에서 지난 '20년부터 사업대상지 주변에 가림벽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층수, 세부 시설 등) 및 구체적인 개관 시기('25. 12.)를 안내하고 있었음.
- '22년 1월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집에 따르면 부지 재선정을 '23년 1~2월 내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서울시·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사실상 철회' 기사 발표('23.2.24.)
-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23.3.9.)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 변경(문래동→여의동)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 변경 이후 중앙투자심사
 - 사업명: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 중앙투자심사결과: 재검토('24.10.) → 조건부 통과('25.4.)
- 국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24.11) 및 감사원 감사 착수('25.2.)
 - 감사 결과 법적·절차적 문제 없음('25.7.)

		
개관 시기 안내	사업내용 안내	'23년 텃밭 운영 예정

※ **참고사항: 현재 해당 부지는 「문래동 꽃밭정원」으로 운영 중**

- 시설명: 문래동 꽃밭정원
- 규 모: 6,300㎡
- 사업비: 2,235백만원(특교금)
- 주요시설: 잔디광장(700㎡), 정원지원센터, 꽃밭정원 3개소, 황톳길(290m), 순환산책로(200m), 어린이놀이터 등

2.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 사업」에 대한 자료 검토

□ 사업개요

○ 메낙골 공원 현황

- 위 치: 신길동 4934-4번지 일대
- 면 적: 도시계획시설(공원) 17,229 m^2 , 지구단위계획구역 45,692 m^2

○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주요 변경 내용

- 부지 직접 매입 후 공원 조성
 - 각 관리청(국방부, 병무청)의 부지 활용과 연계한 시민이용공간 최대 확보
- 특별계획구역1-1, 1-2 구분 → 특별계획구역1로 통합
- 시민이용공간 최소 50% → 최소 60% 확대
- 도시계획시설(공원) 특별계획구역 내 포함

□ 조사결과 주요내용

- 조사시점: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219호('23.6.1.)] 이후
- '23.6.1.: 병무청부지(특별계획구역1) 및 국방부부지(특별계획구역2)에서 시민이용공간이 60% 이상 확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

- 주민 통행불편 민원사항(일부구간 담장 철거 및 보행로 개방 시간대 확대)에 대하여 관계기관(국방부, 병무청)과 면담
 - 공공보행통로 지정 (2개소/동~서 : 폭원 10~15m, 남~북 : 폭원 5m)
 - 병무청, 국방부 부지 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보행통로 자체 조성토록 협의
 - '24.2.29.: 해군(재경군무지원대대 중대장) 방문
 - '24.4.2.: 주민 통행불편 민원에 따른 협조 요청 (區→국방부, 병무청)
 - '24.6.27.: 서울지방병무청(운영지원과장) 방문
 - '25.2.12.: 해군(재경군무지원대대 중대장) 방문

(해 군) 부지 철거 공사중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

※ 해병대회관 부지 철거 관련

- 해병대회관 부지 철거는 '25년 7월 철거 공사를 착공하여 부지정리까지 완료 예정
- 철거 이후 '26년 중 부지 반환하여 부지 재산관리청 변경(해병대 →국방부)

(영등포구)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공사 완료 후 보행로 확보 방안 재검토 요청

- '25.3. : 해군재경 군무지원대대 철거를 위한 설계 용역
- '25.6. : 해군재경 군무지원대대 철거 공사 계약
- '25.8. : 해군재경 군무지원대대 철거 공사를 위한 해체 심의 중

당초 공원결정 현황 ('23.6.1.이전)	지구단위계획도('23.6.1.)
	

3. 「의료특구 사업」에 대한 자료 검토

□ 사업개요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다양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 및 영등포구 의료관광의 재활성화 기반을 마련

□ 주요사업

- 스마트메디컬특구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성화
- 의료관광협의회, 실무단, 협력기관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 통번역 서비스 등 협력기관 의료관광 사업 지원

□ 조사결과 주요내용

- 의료와 관광자원과의 연계 사업 개발 부족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환자 유치 어려움

4. 「금융특구 사업」에 대한 자료 검토

□ 사업개요

여의도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성장 기반 마련

□ 주요사업

- 구민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금융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디지털 홍보영상 송출
-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심의·승인

□ 조사결과 주요내용

- 금융은 국가경제 및 정부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제 산업 분야로 금융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권한에 한계가 있음
-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및 지역 인프라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

VII 조사 실시 내용

가. 활동사진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2.12.19.)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3.02.06.)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3.02.17.)



제4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023.2.24.)



제5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023.03.17.)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3.04.12.)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3.04.21.)



제8차 특별위원회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2023.05.03.)



제9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3.06.22.)



제10차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2023.11.27.)



제11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023.12.18.)



제12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024.05.13.)



제13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4.11.18.)



제14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025.03.19.)



제15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5.08.27.)



제16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5.08.29.)

나. 증인 및 참고인 조사

☐ 1차 증인 등 출석 관련

- 일 시: '23.4.12. 10:00 (신문 없이 연기)
- 장 소: 영등포구의회 3층 제1소회의실
- 대 상: 총11명(증인 9명, 참고인 2명)

연번	업무담당	당시직위	성명	출석 신분	출석 여부	비고
1	행정국장	행정국장	유옥준	증인	○	
2	문화체육과 과장	문화체육과 과장	김형성	증인	○	
3	문화체육과 담당자	문화체육과 주무관	유미라	증인	○	
4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전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증인	×	불출석 사유서 제출
5	'22 상반기 문화체육과 과장	도림동장	윤재용	증인	○	
6	'22 상반기 문화체육과 팀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파견 주무관	이덕영	증인	○	
7	'21 하반기 도시재생과 과장	건축과장	정진호	증인	○	
8	'20~'21 도시재생과 과장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증인	○	
9	'19 하반기 도시재생과 과장	공로연수	김종균	증인	○	
10	'22 홍보미디어과 과장	퇴직	유옥순	참고인	×	가족 간병
11	'22 홍보미디어과 팀장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강용찬	참고인	×	코로나 확진

☐ 증인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건

- 증인 불출석 대상자

대상자		출석요구일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일시	부과금액
직 위	성 명			
(전)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2023. 4. 12 10:00	2023. 4. 9.	미부과

- 과태료 부과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 2차 증인 등 출석 관련

- 일 시: '23.5.3.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실시)
- 장 소: 영등포구의회 3층 제1소회의실
- 대 상: 총10명(증인 8명, 참고인 2명)

다. 추진실적

내 용	비고
□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건립 사업부서 변경에 관한 질의 및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질의 -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시점인 2021년까지는 도시재생과 소관이었으며 2022년부터는 문화체육과로 사업 이관됨. - 업무 이관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도시재생과에서 중앙투자심의까지 완료한 후 이관된 업무였기에 따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수인계 등을 위한 회의 등은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M.O.U 체결 관련 내용 질의 - 2020년 1월 21일 서울시가 M.O.U. 체결 협의 요청 공문을 당시 소관부서였던 도시재생과로 발송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논의할 것을 서울시가 다시 제안함에 따라 실제로 논의된 사항 없으며, 이때가 서울시에서 구유지 무상사용을 요청한 최초 시점에 해당함. - 2022년 1월과 2월에 서울시에서 M.O.U. 체결 협의 요청 이메일(M.O.U.초안 첨부)을 문화체육과 담당 주무관에게 발송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담당 팀장에게만 보고됨. - 2022년 1월의 내용은 구유지를 5년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일반 건립협약서(안)이었고, 2월의 내용은 구유지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되며, 귀책 사유자가 건립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 안이었음. - 1개월 사이 급격하게 기조가 바뀐 배경에는 2022년 2월 초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공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에 기인함.	

내 용	비 고
- 문화체육과에서는 해당 M.O.U.초안에 대해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구청 법률고문 변호사 자문 회신(2022년 4월)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4월 21일 서울시 관계자와의 회의에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확답 요구를 받음. - 당시 담당 과장은 코로나 등으로 부재중이었으며, 2022년 4월 22일 서울시장 및 영등포구청장 모두 선거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서울시 관계자와 얘기함. - 구유지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5년 단위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어 서울시의 요구조건 수용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M.O.U.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관련 내용 질의 -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유로 부적정(반려) 처분 났으며, - 2차 중앙투자심사에 규모 등을 축소한 안으로 재상정한 결과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승인을 조건으로 승인됨(2021년 10월) - 중앙투자심사의 핵심 쟁점은 “경제성”으로 경제성 제고를 위한 규모의 재검토(축소)가 주된 이슈였음. -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구유지에 건립된 서울시 소유 시설에 대해 토지 임대료에 관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하여 조건부 승인 결과를 받았다고 답변함.	*여의도로 부지 변경 이후 중앙투자심사 결과 ·(' 24.10.) 재검토 처분 ·(' 25.4.) 재상정 후 조건부 통과

내 용	비 고
□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이전에 관한 질의(문래동 → 여의도) 및 영등포구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문래동이 제2세종문화회관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부지로 확정 발표된 것은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2019.10.19.)에 따른 것이며, - 이후, 여의도 부지 이전에 대해 구청에서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발표일 2일 전인 2023년 3월 9일임. - 서울시는 문래동의 입지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여의도로 부지 이전 하게 되었으며, 배포된 보도자료를 근거로 교통 및 규모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문래동의 입지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법적 문제로 인해 구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관내 시유지에 건립할 것을 서울시에 계속 제안해 왔던 상황이므로 여의도로 부지 이전은 토지 무상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며, 문래동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다고 답변함.	
□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 및 구립 복합문화시설(문래동 부지) 건립에 관한 질의와 구민 이용시설에 구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현 구청장의 공약은 “제2세종문화회관 신축 건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토지 사용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음. - 구립 복합문화시설(문래동 부지)에 관한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 여가 및 문래창작촌 예술인들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답변함.	

내 용	비 고
□ 매니페스토 관련 질의 [추진근거 및 구성·운영방식 등] 및 구청장의 공약사항 변경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제안 - 매니페스토의 주된 업무는 공직자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관리하는 것이며, -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주민배심원단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및 영등포구의 용역을 통해 영등포구 주민 35명을 선정(신청자 200명 대상 무작위 선정 방식)하고, 이들이 상호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이와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하여 35명이 38만 영등포구민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배심원단 선정 방식이 무작위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며 구청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함. - 또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영등포구 간의 계약 관계로 인해 구청장의 공약사항 점검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신력 있는 단체이므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함.	
□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음에도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질의 - 2020년 5월 29일에 열린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구유지 무상사용을 승인해 준 것으로 구유지의 영구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타당성 조사는 통상적으로 법적 저촉사항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답변함.	

내 용	비 고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안) 관련 주민과의 소통 부족 의견 - 2021년 이후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6번의 회의를 거쳐 2022년 12월 15일부터 14일 동안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총 471건의 주민 의견 내용이 있었음. - 이후 2023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심의 이후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를 실시했을 때는 단 3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됨.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에 실시한 열람공고 기간의 의견 제출 건수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임을 제시함.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와 관련해서는 경미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된 것으로써, 절차를 완성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법적인 절차 외에는 별도로 홍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흡했다고 답변함. - 2023년 6월 1일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주민들과의 공식적인 설명회가 없었으며, 현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통행로 개설” 요구사항은 대상지가 국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각 관리청에게 의견 전달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방법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개진함.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홍보 활동 미흡에 대한 질의 - 스마트메디컬 특구 관련 공지 내용 등이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며, 2024년 1월 이후에는 콘텐츠가 올라오지 않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환자	

내 용	비 고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감하는 바이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다국어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 기관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의료관광을 통하여 부대적으로 관내 관광 및 숙소 시설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함.	
□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간 혹은 시사경제 흐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 요구 - 2023년 7월 1일 의료특구팀이 관광팀으로 흡수되면서 예산의 규모 등 사업 초기보다는 사업 규모가 축소된 면이 있지만, 의료관광에 대한 유입 인구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함. - 특히, 정부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특별 교부금 신청 및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하여 향후 스마트메디컬 특구로서 영등포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길 노력해 달라고 당부함.	
□ 스마트메디컬특구 관련 예산이 특례법에 의한 규제 완화가 아닌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해 질의 - 의료특구로 지정이 되면 규제 특례법에 의거 6가지 항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특례는 도시계획에 따라 용적률 및 건폐율이 완화되는 것임. - 하지만, 2024년 스마트메디컬특구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약 2억 7,400만원에 대하여 대부분이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6가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추진 사업 내용이 부실함을 개진함.	

내 용	비 고
□ 여의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금융특구로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향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5년 동안 594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설명함. - 이에 대하여 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에 계획 및 예산을 요구하는 등 여의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금융특구로써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아울러, 다양한 영어·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하므로 정주 환경 혹은 여의도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함.	

VIII

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

□ 총 평

- 이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금융특구·의료특구 사업, 메낙골 지구단위(안)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음.
- 조사 기간 중 제16차의 회의와 5회의 업무보고, 2개 시설의 현지 확인, 증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음.
- 더불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기간 중 감사원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감사가 있었으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변경 과정의 적정 여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뢰서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하여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점이 없음을 '25.7.10.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사실이 있음.
- 아울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증인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미부과로 의결함.

IX

향후계획

□ 조사 결과 집행기관 통보 및 사후 확인